

불법폭력시위 근절, 100萬人 서명 운동

- 경찰청, 최루액 사용 적극 검토중 -



전투경찰대원들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을 피해 몸을 던지고 있다.

재향경우회는 최근 일련의 폭력시위 양태가 경찰관을 향해 사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뾰족한 죽봉으로 눈을 찌르고, 물을 끓여붓는 등 전쟁을 방불케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국가공권

력이 힘없이 무너지고,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 민주주의가 근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사진전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투입해 불법 행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최근 1-2년새 대규모 폭력시위가 자주 발생한 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각목 등 폭력시위용품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3월~5월 울산 플랜트 노조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2-3미터 길이의 공업용 쇠파이프를 묶고, 밑부분에 수레바퀴를 달아 만든 전차를 앞세워 경찰에 맞섰던 일이 있고, 또한 11월 농민대회에서는 쇠파이프 2천여개를 집회현장에 반입해 전·의경들을 향해 휘두르고, 시위대 차단을 위해 막아 놓은 전경버스에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불을 질렀고, 지난 7월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사 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서는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LP가스통을 개조한 사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물을 끓여 붓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격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시위 건수 자체는 줄어 들고 있지만(2001년 215건, 2002년 118건,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작년 77건, 금년 7월까지 30건) 일부 농민 및 노동단체의 시위가 과격화되면서 경찰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01년 673명, 2002년 287명,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7월까지 469명) 이다.

불법 폭력시위는 시위대 자신들에게나 국익 차원에서라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후진적인 시위 문화에 기인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 및 경제의 끝없는 추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장되되 불법폭력시위는 법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공권력을 잡는 첩경일 것이다. 시위 참가자 개개인들의 의식 전환, 정부를 비롯한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의지,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코자 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법조비리와 수사구조 개혁

— 탁 종 연 (美 플로리다 주립대 범죄학 박사/ 한남대 교수)

한국의 법조비리는 매우 독특한 범죄다. 일반시민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친숙할 정도로 법조비리가 만연한데도, 판·검사가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건국 이래 현직 판사로는 이번엔 법조 브로커에게 돈과 향응을 받아 구속된 조관행 고법 부장판사 정도가 최초이며, 검사로는 같이 구속된 김영광 전 검사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의정부, 대전, 군산, 춘천 등 여러 곳에서 판·검사가 돈과 성적향응 등을 받은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판·검사에 대한 처벌은 그야 말로 유아무야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언론에 불거진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법비리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조차 사법적인 처벌 없이 변호사로 변신하여 활동 중이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

자정노력강구, 감찰기능 강화 등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 살 깎기 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이기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대책으로 법조비리가 근절되리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의 일각에서는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재추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는 많은 법조범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굳이 별도의 예산과 인원을 들이고 야당에서는 정권의 주구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공수처 설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까? 나는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작년 까지 국가적 이슈였다가 검찰의 반발로 중단된 수사구조개혁으로 별도의 기구설

치 없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서의 수사구조개혁

본인이 유학시절 만난 미국의 전직 검사는 미국의 법조 비리가 적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 때문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검사뿐 아니라 한국의 판사 못지않은 권한을 가진 판사까지도 변호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남용할 경우, 연방경찰적인 FBI는 물론 지역경찰의 추상같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기소권과 재판권은 검사와 판사에게 있지만 경찰이 밝혀낸 판·검사의 범죄혐의를 무조건 목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 사이에 건강한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비리 없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검사는 물론 일개 검찰직원의 비리조차 수사하기 어려운 것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국가의 운영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 받는 평등의 원칙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현재의 판·검사에 대한 사실상의 법조비리 면책특권은 헌법상 금지된 특권층의 전형적 예이므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기본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은 최대의 효율성을 갖춘 최적의 정책으로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 警友會, 사회봉사활동 적극 추진

- 경찰업무 · 수해복구 지원 등에 팔 걷고 나서 -

재향경우회가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경찰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펼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경우회는 지난해 9월 봉사활동의 생활화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금년 8월까지 1년간 방법·교통 및 거리질서 유지,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 찾기, 자연보호 캠페인, 불우이웃 돕기 등 전국 경우회별로 경찰지원 활동 등 약 300여회에 걸쳐 치안협력단체로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그 직분에 부합되는 활동들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우회는 관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순찰조를 운영해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활동을 벌이고 있고, 부산경우회도 교통보조, 방범지원, 자연보호 봉사대

를 만들어 출퇴근 시간 및 복잡한 대형 행사장의 교통지원, 주택가와 금융기관 주변 방법순찰, 등산로 및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역회 단위의 봉사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서부 경우회는 주먹밀집 지역에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매주 수요일 관내의 9개 치안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식사 및 순찰 활동 등 소내 공백시간 동안 민원상담 관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다.

경우 무공화 음악단은 수락산, 아차산 등 수도권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조심 음악캠페인을 전개하여 등산객들을 계도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봉사활동의 일환이지만 수해민 돕기에 나선 경우들의 운정은 남다르다.

중앙회가 지난 7월 장마철 수해 피해민들을 위해 공영방송인 MBC에 성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서울양천 경우회는 수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평창강 유실 제방 복구에 나섰고, 부산진 경우회도 경남 진주시 문산면에서 침수 복구 및 방역 활동에 나서는 등 수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비롯, 전국의 모든 대의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지난 2004년 10월 구홍일 경우회장이 취임사에서「현직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제2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치안행정의 버팀목으로서 담당하고 활기찬 경우회를 만들자」고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있어 더욱 더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國民 편익 위한 수사권조정,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검·경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를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0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건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회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